

제 호

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

회 사 명

사업자등록번호

대표자 성명 (생년월일)

주 소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직인